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434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3년 7월 3일

제안자 : 재정경제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용석 의원이 2013년 6월 7일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, 인택환 의원이 2013년 6월 10일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을 2013년 7월 3일 제24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후 심사한 결과,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제안·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함(안 제3조).
- 나.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).
- 다. 상인에 대한 각종 교육사업의 시행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
- 라.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마.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바.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, 인근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상인조직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음(안 제8조).
- 사. 전통시장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장려함(안 제9조).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.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.
3. “상인조직”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.
4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5. “경영현대화사업”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, 공동사업, 판로촉진과 홍보,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‘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’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의 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’ 및 자치구의 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’을

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권활성화사업
2. 시설현대화사업
3. 경영현대화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상인교육 등)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, 영업기법의 개선,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·자문·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상인들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상인교육과정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료 감면 등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」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, 대부료,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7조(빈 점포의 활용 지원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조직

이 상인이나 고객을 위해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조직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구청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.

제9조(우선구매 등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에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행사용품, 포상금 지급, 선택적복지, 그 밖에 소모품 구입 시 일정 비율액을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·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한다.

제11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